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13.3.24> (앞쪽)

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① 명 칭(상호)		
	② 대표자의 성명		
	③ 주 소		
④ 대행업무의 범위			

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[☎ ( ) -]

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
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	수수료
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.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.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규정 4. 보안심사 기준 5. 그 밖에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